

현안분석 2015-09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현 대 호

현안분석 2015-09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

현 대 호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
Study on Legislative Improve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
- focused on non-profit organizations within the remit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연구자 : 현대호(연구위원)
Hyeon, Dae-Ho

2015. 11. 30.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사회 수요의 증대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늘어나고 법인화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비법인 형태의 단체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허가를 얻어 마치 공인단체처럼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음
-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사회활동이 증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비영리단체의 공익성을 증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등록 등을 규율하는 현행 민법 및 관련 규칙의 개정을 통한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사회 참여를 증대하고자 함
-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에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종교단체의 법인화에 관한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외국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정책과 법제 현황의 분석
 - 일본의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우리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관련 문제점과 대법원의 판례 등의 분석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관한 허가주의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과 구분하여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한 (가칭)종교법인법의 제정방안을 제시
 - 그 밖에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가주의 도입 등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 제시

III. 기대효과

- 우리나라에서 비영리법인의 활동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최근 비영리법인(특히, 종교법인)의 등록, 규제 등에 관련한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정책 자료 제공

▶ 주제어 :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민법, 사단, 재단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 Recently, with social demand increasing,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been assuming greater roles, and increasing their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through incorporation
- Especially, religious foundations intend to act as if they are public organizations permitted by the government or local authorities rather than non-corporate institutions
-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social activities growing, it is needed to arrange a related legal scheme and increase public interests of non-profit organizations

Purpose

- This study intends to increase public interests and social particip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by amending standing civil codes and related regulations, which govern registr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etc.
- Additionally, this study intends to arrange related legislation, prepare a plan for legislation concerning incorporation of religious foundations, and improve legislation in order to resolve complaints

against non-profit organizations within the remi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I. Main contents

- Analysis of policies and legislation as to foreign non-profit organizations
 - To analyse related legislation on the incorporation of foreign (especially Japanese) non-profit organizations and religious foundations so as to draw implications for our legislation
- Analysis civil non-profit organizations, relevant issues and the supreme court's cases
 - To suggest improvements concerning permits required under the article 32 of Civil Codes
 - To suggest the Religious Foundations Act(tentative) regulating the incorporation of religious foundations which separate from non-profit organizations
 -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regulations concerning non-profit organizations within the remit of the Department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accordance to the introduction of permit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under the article 32 of Civil Codes

III. Expected Effect

- To be utilized as basic materials for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commensurate with th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Korea
- To be offered as policy materials for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related to registration and regul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especially religious foundations)

▶ key words : non-profit organization, religious foundation,
Civil Codes, corporation, foundation

목 차

요약문	5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16
제 2 장 일본의 정책 변화와 입법 동향	17
제 1 절 개 관	17
제 2 절 일 본	17
1. 개 요	17
2. 종교단체법	20
3. 현대 일본의 종교 관련법	21
제 3 절 시사점	24
제 3 장 현행 비영리법인 관련법제와 주요 내용	25
제 1 절 개 관	25
제 2 절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25
1. 개 요	25
2. 법인격 없는 사단	28
3. 법인격 없는 재단	35

4. 민법 제32조 관련 주요 쟁점	36
5. 시사점	40
제 3 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의미	41
제 4 장 비영리법인의 관련 법제개선 방안	43
제 1 절 개 관	43
제 2 절 2014년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43
1. 개 요	43
2. 비영리법인에 관한 주요 쟁점과 개선사항	45
제 3 절 종교법인에 관한 법제화 방안	52
1. 개 요	52
2. 총 칙	54
3. 설 립	57
4. 관 리	58
5. 정관의 변경	59
6. 합 병	60
7. 해 산	60
8. 등 록	61
9. 종교법인의 등록심의 위원회	62
10. 기 타	62
제 4 절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선	63

제 5 장 결 론	67
참 고 문 헌	69
<부 록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의 현황(총괄표)	73
<부 록 2> 광주광역시 종교법인의 설립허가 현황	77
<부 록 3> 일본의 종교법인법	7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헌법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종교단체는 자유로운 비법인 형태의 단체가 아니라 굳이 규제를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설립 허가를 얻어 공인단체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신뢰성을 높이려는 욕구에 따른 것이나, “법인 설립”이 종교단체의 공인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며 비영리법인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교 분리의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즉 종교법인의 설립은 재산과 단체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지 종교단체의 ‘공인화’와는 무관하다. 또한 단체설립 후 내분 발생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15.7.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2호)’에 관한 사항과 연관지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종교관계 법인은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종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임에도 개별법이 없고 개념정의 또한 없다. 따라서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종교단체의 법인설립에 관한 민원발생시 ‘종교’인가 아닌가에 대한 근원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철학, 사상, 참선, 수련, 민속 등을 종교와 구분하지 못해 혼돈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민법 제3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민법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개정 움직임과 관련한 입법사항을 살펴보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형태의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화 및 관리·감독 등에 관련한 입법론도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서 범위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일본의 입법례를 간단히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상황에 맞는 비영리종교 단체의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종교단체의 법인화에 따른 입법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비영리법인지도감독규칙에 관하여 비영리법인의 등록에 대한 절차 사항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 2 장에서는 일본의 법인에 관한 정책과 법제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의 법인화 등에 관한 법제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3 장에서는 현행법상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입법개선을 살펴보고, 관련 대법원의 판례 등에서 새로운 입법사항(법령을 보완하는 해석, 즉 일종의 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에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에 관련된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4 장에서는 종래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조항과 구별하여 비영리단체인 종교단체의 법인화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의 비영리법인지도감독규칙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장 일본의 정책 변화와 입법 동향

제 1 절 개 관

제 2 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현상(종교단체의 법인화 경향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의 관련 정책 및 입법 동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제 2 장에서는 미국이나 독일 등과 달리 일본의 경우가 입법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치를 하여 왔기에 일본의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제현황을 살펴보고자 하며, 무엇보다도 종교단체를 법인화를 다루고 있는 일본의 종교법인법을 참조하여 종교단체의 법인화를 규율하는 입법(가칭 ‘종교법인법’)의 제정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일 본

1. 개 요

(1) 일본의 정책 변화

근대일본의 종교정책은 명치유신(明治維新)초기의 신불분리정책(神佛分離政策)을 비롯한 신도국교화(神道國教化)정책, 그리고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명치헌법’으로 약칭함) 및 교육에 관한 칙어(教育ニ關スル勅語, ‘교육칙어’로 약칭함)¹⁾의 발포(發布)를 통해 확립된 국가신도화정책을 들 수 있다. 신불분리정책은 1868년에 사원의 폐합사(廢合寺), 승려들의 강제 환속, 신기관에 의한 신사 통제, 불보살 및 권현 등의 신호(神号) 폐지, 신사에 안치되어 있던 불상과 불경

1) 1890년 10월 30일에 메이지 천황의 명으로 발표된 칙어이다. 그 취지는 일본 제국 신민들의 수신과 도덕 교육의 기본 규범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1890년 10월 31일 반포되었으며 1948년 6월 19일 폐지되었다.

및 각종 불구 등의 제거로 나타났다. 이는 나라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신불습합(神佛習合)의 관행을 타파하는 것으로 1869년 7월 국민전체의 교도를 목적으로 태정관 교도국에 선교사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대교선포(大教宣布)’²⁾의 칙령이 발해졌는데, ‘대교’란 천황의 고대적, 종교적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신도적 국체관념이다. 대교선포 이듬해에 국가가 제사할 신들의 체계와 관·국폐사를 지정하고 그 아래 부·변·현사·향사 등의 위계를 정하는 포고가 발해졌다. 이로 인해 이세신궁(伊勢神宮) 이하 모든 신사에서 신직의 세습이 금지되고, 전국 신사와 신직이 국가기관화³⁾ 되었다. 이는 신도가 신사신도 중심에서 황실신도로 재편된 것을 의미한다.

이후 1882년에 신관과 교도직의 겸임제도가 폐지되고 교파신도가 독립하는 등 정교분리가 성립되었다.⁴⁾ 이후 명치헌법 제28조⁵⁾에 ‘신교의 자유’가 규정되고 다음 해인 1890년에 교육칙어가 발표됨으로써 명치정부의 천황제 이데올로기는 ‘신교의 자유’를 매개로 한 국가신도 체제로 귀결되었다.⁶⁾

(2) 일본의 입법 변화

일본의 경우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달리 소위 “종교법인법”을 통하여 종교법인을 규율하고 있으며⁷⁾, 우리나라의 민법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민법은 법인을 공익법인과

2) 1870년 2월 3일에 발행된 조서, 불교 사원과 불상 및 불경 등을 파괴하였다.

3) 태정관에 의해 전국 신사는 모두 국가의 종사(宗寺)임이 선언되었으며, 신사가 국가의 가구 파악을 위한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4) 이는 신도비종교설에 입각한 국가신도의 공식적인 성립을 의미한다.

5) 第28条 日本臣民ハ安寧秩序ヲ妨ケス及臣民タルノ義務ニ背カサル限ニ於テ信教ノ自由ヲ有ス

6) 국가신도에 대해서는 박규태, “국가신도란 무엇인가”, 『종교연구』(제29집), 한국종교학회, 2002. 240-246면 참조.

7) 上別府 正信, “일본국헌법과 종교법인법에 본 일본의 종교정책·종교행정과 그 문제점”, 『종교와 문화』(제21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1. 77면 참조.

비공익법인으로 나누고⁸⁾, 공익법인에 한하여 민법상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⁹⁾. 그러나 1998년 공익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많음에 따라서 법인격취득이 어려운 비영리법인의 법인격 취득을 용이하게 하도록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이 제정되었고, 또 2001년에는 중간법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 6월에는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에 관한 법률’과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입법시 관련규정들을 개정하는 법률’ 등을 제정함으로써 법인제도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였다¹⁰⁾.

종교법인법의 특징은 독자적인 법률이며, 이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종교법인들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민법상의 일반법인이나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않은 특수법인이다 라는 점이 특징이다¹¹⁾. 따라서 종교단체는 이 법에 의해서만 종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일본의 종교법인법 제4조제1항), 종교법인이 되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한 정관의 목적과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동법 제10조). 종교법인법에서는 종교법인이 공익사업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사업을 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는 점과 함께 종교법인의 설립이 우리나라의 허가주의나 독일의 인가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¹²⁾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가진다.

8) 일본민법은 제33조에서 법인의 성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이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법인과 영리 사업을 운영한 것을 목적으로 한 법인 및 그 밖의 법인의 설립·조직·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는 이 법률 그 밖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윤철홍, “종교단체의 법인화”, 『비교사법』(제15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12. 135면.

10) 이러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현행 일본 민법상 법인규정에는 법인의 성립(민법 제33조), 법인의 능력(동법 제34조), 외국법인(제35조), 등기(동법 제36조), 외국법인의 등기(제37조) 등만이 규정되어 있다.

11) 윤철홍, “종교단체의 법인화”, 『비교사법』(제15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12. 135면.

12) 종교법인법 제12조 제1항에서 등기 전에 관할청에 인증을 받도록 하고, 제15조에

2. 종교단체법

일본의 국가신도화정책의 실행과정에서 근대적이고 조직적인 종교 관련 법령인 ‘종교단체법’¹³⁾이 제정되어 졌다. 종교단체법은 명치유신 이래 종교에 관한 통일적인 법령으로 1939년에 공포되고 다음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¹⁴⁾ 명치헌법 제정이전에 발표된 종교단체에 관한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 포달(布達), 교부성달(敎部省達), 내무성령(內務省令), 훈령(訓令) 등은 명치헌법에 반하지 않는 한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의 편익을 부여하고 보호·감독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많아 종교행정의 근본법칙의 제정 필요가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종교단체법이 제정되었다. 종교단체법은 신도교파·불교종파·기독교·기타 교단과 거기에 포괄되는 사원·교회를 ‘종교단체’로 규정하고,¹⁵⁾ 공인받지 못한 유사종교도 ‘종교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종교단체법의 중요한 특징은 ‘종교단체의 설립’ 또는 ‘종교법인의 설립’에 관해 ‘인가주의’¹⁶⁾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단체법은 단체의 설립 또는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또 문부대신으로부터 감독, 조사 및 인가취소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행위 외에

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준칙들을 갖추고 설립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에서의 인증은 종교단체의 해당여부와 단체의 정관과 설립절차의 적합성 여부만을 확인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윤철홍, “종교단체의 법인화”, 『비교사법』 (제15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12. 136면).

13) 宗教団體法 (公布)昭和14年4月8日法律第77号.

14) 종교단체법 제정의 발단은 1899년 제14차 제국의회에 제출된 종교법인 및 1898년 민법의 시행 시점부터이다. 종교단체법의 제정에 관해서는, 渡部蕪, “宗教法人法”, ぎょうせい, 2001. 5-11면 참조.

15) 宗教団體法 第1条 本法に於て宗教団體とは神道教派, 仏教宗派及基督教其の他の教団(以下単に教派, 宗派, 教団と称す)並に寺院及教會を謂ふ

16) 宗教団體法 第3条 ③ 教規, 宗制若は教団規則を変更せんとするとき又は法人に非ざる教派, 宗派若は教団が法人たらんとするときは主務大臣の認可を受くることを要す

도 교과·종파의 장, 교단통리자의 취임에 대해서도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대폭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¹⁷⁾은 제1조에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할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여기에 동조하여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전항의 미수죄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1931년에 개정된 치안유지법은 “국체를 부인하거나 이세신궁 및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는 내용을 유포함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그 결사의 임원 및 기타 지도자적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무기 혹은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에 동조하여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7조) 및 그런 목적을 가진 집단도 처벌하는 하는 조항(제8조)을 두어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¹⁸⁾에 이용되었다.

3. 현대 일본의 종교 관련법

(1) 신도지령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그동안 유지해 오던 종교정책 즉, ‘국가신도화정책’은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가 1945년(昭和20年) 12월 15일에 발한 ‘국가신도, 신사신도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 보전, 감독 및 홍포의 폐지에 관한 건’¹⁹⁾(‘신도지령’이라 약칭함)

17) 1925년에 제정·시행되었으며 패전 후인 1945년에 폐지된 법률이다. 특히 공산주의 혁명 운동의 격화 우려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를 비판 하는 모든 활동 종교단체, 우익활동, 자유주의 등이 탄압의 대상이 되어 갔다.

18) 야소기독지신약협회 사건(1941년), 일본홀리스트교회 사건(1942년), 어선신교(御先神教) 사건(1942년), 무종파그리스도교 사건(1943년), 대일교(大日教) 사건(1943년) 등.

19) 『国家神道, 神社神道ニ対スル政府ノ保証, 支援, 保全, 監督並ニ弘布ノ廃止ニ関スル件』(SCAPIN-448)을 통칭한다.

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 신도지령의 직접적인 대상은 국가신도의 기반이었던 신사신도였지만, 불교·기독교·교파신도 및 기타 모든 신도·사상·교육·철학에 대해서 적용됨으로서 일본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도지령은 군국주의적(극단적) 국가주의 사상의 근절과 종교의 자유 확립,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종래의 교파, 종파, 교단, 사원, 교회 등과는 달리 문부성의 종교행정의 대상이 아닌 내무성 시기원의 관할에 있는 신사신도를 종교로 보아 국가로부터 분리시켰다. 국가신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을 폐지하고, 신사는 사적인 하나의 종교로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신사는 국가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종교단체로 봄으로써²⁰⁾ 교파, 종파, 교단, 사원, 교회 등의 여타 종교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적 기반 위에서 서게 되었다.

(2) 종교법인령

신도지령에 의해 종교단체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종교법인령²¹⁾이 제정되었다. 종교법인령은 종교법인의 설립에 관해서 준칙주의(準則主義)를 취하고 있어서, 소정의 규칙(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종교법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종교단체법과는 달리 종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감독규정은 거의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 종교법인령은 종교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종교법인령이 시행됨으로 인해 기성교단으로부터 분파, 독립, 신(新)교단 설립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법인의 난립이 초래되었고, 법적인 분쟁이 증대하였다. 종교법인령의 불비를 지적하는 의견이 증대하였으나, 점령군은 종교법인령의 개정에 소극적이

20) 1946년 2월 종교법인령의 일부개정 이후.

21) 宗教法人令 (公布) 昭和20年12月28日 勅令 第719号.

었다. 또 종교법인이 되지 않은 채 활동했던 교파, 종파 교단도 많았다. 종교법인 또는 법인 아닌 종교단체는 종교법인령의 감독규정의 불비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탈세를 기도하는 사건이 빈발하였다. 이에 1949년부터 종교법인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1951년 ‘종교법인법제정안’이 일본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4월 3일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3) 종교법인법

종교법인법²²⁾은 이전의 종교법인령의 기본정신인 신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은 유지하면서 종교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인증(認証)’을 받도록 하여 준칙주의의 폐단을 극복하려 하였다. 이는 종교법인령에 비하여 종교법인(단체)에 관한 규정이 다소 강화되었지만, 근간은 변경되지 않았다. 그러나 종교법인법상 종교단체의 법인격 취득이 안이하게 이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으며, 1995년 3월 20일에는 종교법인인 옴진리교(オウム真理教)²³⁾에 의한 사린가스 살포사건²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판과 다수의 사건들을 계기로 종교법인에 관한 규정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종교법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 이전의 종교법인법은 복수의 도도부현 내에 있는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법인만이 문부과학대신이 관할청이 되었으나, 개정을 통해 복수의 도도부현에서 활동하는 모든 종교법인 개개에 관해서는 문부과학대신이 관할청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종교법인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가를 관할청이 확인하기 위해 임원명부 및 재산목록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비활동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22) 宗教法人法 (公布) 昭和26年4月3日 法律 第126号.

23) 아사하라 쇼코가 창설한 종교로서, 1989년 8월 25일 도쿄도에 종교법인으로 인증되었다.

24) 1995년 3월 20일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하여 13명이 사망하고 6,000여명이 다친 사건.

문부과학대신이 재판소에 해산명령청구 등을 통해 비활동 법인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자 외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해관계인은 사무소 비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시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였다. 또 관할청은 종교법인의 업무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요구 또는 직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부과학대신의 자문기관인 종교법인 심의회의 위원을 늘려 ‘10명 이상 20인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제 3 절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 및 종교단체의 법인 설립 내지 법인격의 취득에 관한 입법주의는 각국의 역사와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사전개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아래에서 살펴볼겠지만 우리 민법 제32조가 취하고 있는 “허가주의”도 문제가 있으며, 오늘날 국민의 다양한 수요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도 반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와 구별하여 법인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무수히 증가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투명성과 자율성 및 공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제 3 장 현행 비영리법인 관련법제와 주요 내용

제 1 절 개 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을 일반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에 관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허가’를 요구한다는 점과 ‘비영리’라는 개념의 모호성, 그리고 일반적인 비영리 형태의 단체와 종교단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실무상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경우에 있어서 소위 ‘종교단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²⁵⁾가 제기되고 있다.

제 2 절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1. 개 요

(1) 비영리법인의 현황과 과제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학술, 종교,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즉 비영리사단이나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으로 성립한다. 이와 같은 민법

25) 실제로 종교활동과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종교법인으로 설립하여 세제 혜택을 받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제32조의 입법만으로는 오늘날 다원주의의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사회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비영리기관이 정부를 대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영리기관의 활동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²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법조항의 개정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계나 비영리단체에서는 이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일관되게 제시되어 왔다.

(2) 종교단체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기준으로 560여개 이상의 교단 및 교파가 존재하고 있지만²⁷⁾ 법인격을 취득한 종교법인은 2015년 기준 870여개에 불과하며,²⁸⁾ 2013년 7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1,316개와 문화재청에 168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고(자세한 것은 [부록 1] 참조), 광주광역시에서 종교법인의 설립허가 현황으로 25개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자세한 것은 [부록 2] 참조). 이처럼 종교법인이 적은 이유는 이러한 종교단체가 법인격 있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많은 종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및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종교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1조『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와 민법 제32조『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6) 우리나라에는 2014년 기준으로 약 21768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다(국세청 법인세 신고 현황 http://stats.nts.go.kr/national/major_detail.asp?year=2015&catecode=A08002 참조. 최종방문일 2015년 11월 30일).

27) 고병철 외 5인,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2. 23면 참조.

28)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5.1.

(http://www.mcst.go.kr/web/s_data/corporation/corpList.jsp 참조. 최종방문일 2015.11.30.).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의 설립을 법정주의로 규정하고, 특히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허가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허가’가 ‘주무관청의 재량행위’로 해석됨에 따라²⁹⁾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제한되고 있다³⁰⁾.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의 제한은 공익적 요소가 강한 재단법인뿐만 아니라 사인이 특별한 목적하에 결성되는 비영리사단법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결사의 자유가 침해되고, 다양한 형태의 단체의 설립과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³¹⁾.

둘째, 민법 제32조에서의 “허가”라는 용어의 법적 성질이 강학상의 허가인지 아니면 ‘인가’의 의미를 가진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³²⁾. 2004년 민법개정특별위원회와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 법인분과에서도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개정할 것을 일관되게 제안³³⁾하였으며, 법무부는 2014년 6월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민법개정안에서 ‘인가주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³⁴⁾.

29) 대법원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96.9.10. [95누18437]).

30) 윤철홍,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47권), 한국민사법학회, 2009.12. 720면.

31) 윤철홍,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47권), 한국민사법학회, 2009.12. 720면.

32) 윤철홍,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47권), 한국민사법학회, 2009.12. 721면.

33) 송호영, “법인설립에 있어서 등기·등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비교사법』(제16권 4호(통권47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12. 10-11면.

34) 배원기, “일본의 비영리(공익법인)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우리나라제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제11권 제1호), 2012. 4-5면.

2. 법인격 없는 사단

(가) 의 의

위에서 지적했듯이 민법 제31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실생활에 존재하는 많은 독립성이 있는 단체는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존재한다. 대법원의 판례는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았다.³⁵⁾ 한편, 법인격 없는 사단의 법률관계는 사단과 구성원 사이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능력과 소송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등기법은 제26조제1항『중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과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다.³⁶⁾ 예컨대,

35) 대판 1999.4.23. [99다4504]

36)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나,³⁷⁾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며,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³⁸⁾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가 없다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며, 상대방의 선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³⁹⁾ 그렇지만 법인격 없는 사단이 타인 사이의 금전채무를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행한 타인에 대한 업무의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어서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판 1996.9.6. [94다18522]).

37) 민법 제63조는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며, 통상의 절차에 따른 새로운 이사의 선임이 극히 곤란하고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단이나 재단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대판(전합) 2009.11.19. [2008마699]).

38)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사원총회 결의사항은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판 2003.7.22. [2002다64780]).

39)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규약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⁴⁰⁾ 그러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다.⁴¹⁾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조합이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3.7.11. [2001다73626]).

40) 민법 제275조, 제276조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판(전합) 2007.4.19. [2004다60072,60089]).

41) 민법 제276조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

(a) 교 회

교회는 보통 일정한 종교적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다.⁴²⁾ 따라서 교회의 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진다.⁴³⁾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⁴⁴⁾

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된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전합) 2005.9.15. [2004다44971]).

42) 원고 신창교회는 대한기독교 장로회의 소속 교회로서 대한기독교 장로회헌법의 규율을 받는 신도 50여명 정도와 제직 10명 정도를 가지고 있고 목사를 제직회장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8조에서 말하는 대표자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판 1962.7.12. [62다133]).

43)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7.11.16. [2006다41297]).

44) 대판 2009.2.12. [2006다23312]

대법원의 판례는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는 새로운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산은 새로 설립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한다고 보았다.⁴⁵⁾

(b) 기 타

이 밖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종종(문중), 사찰,

45)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관계와 그 재산에 대한 구성원의 권리 및 구성원 탈퇴, 특히 집단적인 탈퇴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는 교회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것인데,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대판(전합) 2006.4.20. [2004다37775])

동(洞)·리(理) 또는 자연부락, 입주자대표회의,⁴⁶⁾ 어촌계,⁴⁷⁾ 아파트부녀회⁴⁸⁾ 등이 있다. 다만, 사찰의 경우는 법인격 없는 재단으로 볼 여지도 있다. 예컨대, 대법원의 판례 중에는 종래부터 존재하여 오던 불교단체로 등록한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사찰의 재산을 신도와 승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찰 자체에 속한다고 본 사례도 있다.⁴⁹⁾

(나) 법률관계

법인격 없는 사단의 내부관계는 정관(定款)에 규정한 바에 따라 규율된다. 정관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다수결의 원리와 그 단체의 내부관행에 따른다. 즉 법인격 없는 사단은 사원이 집합체로서 총유(總有)라는 형태로 물건을 소유한다(민법 제275조). 마찬가지로 소유권

46)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1.4.23. [91다4478]).

47) 어촌계의 총유인 어업권의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계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각 계원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대판 1995.8.22. [94다31020]).

48)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대판 2006.12.21. [2006다52723]).

49) 종래부터 존재하여 오던 사찰의 재산을 기초로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으로 폐지)에 따라 불교단체등록을 한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신도들이 그 사찰의 재산을 조성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찰의 재산은 신도와 승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찰 자체에 속한다(대판 1994.12.13. [93다43545]).

이외의 재산권에 대하여도 총유로 한다(민법 제278조). 예컨대, 교회의 구성원은 교회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교회의 재산은 교회의 채무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고 관리인 등의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가 없다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의 선의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⁵⁰⁾

한편, 법인격 없는 사단이 타인 사이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규약에서 정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⁵¹⁾

50)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 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조합이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3.7.11. [2001다73626]).

5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그 보증계약이 무

(다) 해 산

법인격 없는 사단의 해산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르되, 정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해산결정은 그 단체 구성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교회의 분할 경우 법인격이 있는 사단의 해산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적용하여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해산할 수 있고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새로운 교회로 재산의 소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다.⁵²⁾

3. 법인격 없는 재단

법인격 없는 재단은 법인격 없는 사단과 달리 단체의 실체(사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민법은 법인격 없는 재단에 대하여 재산관계에 대하여도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법인격 없는 재단은 부동산등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그에 속한 부동산을 재단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은 법인격 없는 재단법인의 성립이나 재산보존에 대하여 법인격 의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상의 흠결이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규약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판(전) 2007.4.19. [2004다60072]).

52) 대판 2006.4.20. [2004다37775]

4. 민법 제32조 관련 주요 쟁점

(가) 인가주의의 도입 여부

(a) 허가주의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크게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법률에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케 하는 준칙주의(민법 제39조(영리법인), 상법 제172조(상사회사), 노동조합법 제92조(노동조합의 설립) 등), 둘째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설립되는 인가주의(변호사법 제41조(법무법인), 동법 제65조(지방 변호사회) 등), 셋째,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주의(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 등), 넷째, 국가의 재정이나 금융, 산업 등과 같이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되는 특허주의(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마지막으로 법인의 설립을 국가가 강제로 하는 강제주의 등이 있다.⁵³⁾

우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허가의 본질상 주무관청이 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기타 소송으로 이를 다룰 수 없다⁵⁴⁾. 법인은 자율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고, 이러한 단체를 국가가 어떠한 방법으로 법인으로 인정할 것인가는 법정책학적인 문제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법 제2항

53) 윤철홍,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47권), 한국민사법학회, 2009.12. 730면.

54) 강태성, “법인에 관한 민법개정방향”, 『법조』(제538호), 2001.7. 182면.

에서 이러한 결사의 자유는 허가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을 주무관청의 자유재량권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⁵⁵⁾. 이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 중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있어서 민법 제46조의 언급된 주무관청의 ‘허가’를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을 제시한 판례⁵⁶⁾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허가’는 실제로 ‘인가’라는 주장도 있다⁵⁷⁾.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본조의 허가의 법적 성질을 강학상의 ‘허가’로 파악하는 민법학계의 통설적 견해와 본조의 ‘허가’를 자유재량행위로 보는 판례의 입장은 이론상 타당하지 않다. 본조의 ‘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행위인 강학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기속행위인 ‘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판례가 이를 행정관청의 자유재량행위로 보는 한 법인설립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는 것에는 변함에 없다는 점에서 실제상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론에 의한 본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다⁵⁸⁾.

(b) 인가주의의 도입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허가주의’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폭넓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인가주의’ 또는 ‘준칙

55) 김교창, “민법총칙 중 법인에 관한 개정의견”, 『법조』(제548호), 2002. 154면.

56) 대판(전합) 1996.5.16. [95누4810]

57) 김동희, 『행정법 I』, 박영사, 2008. 290면;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제5권 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 52면.

58) 김대정, “민법개정시안에서의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의 전환”, 『법학논문집』(제34집 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7면.

주의'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준칙주의'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취지와 합치되며,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의 취지에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음진리교 사건'이나 우리나라의 '오대양사건'⁵⁹⁾ 등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등의 위험성 및 종교법인의 난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교법인의 경우 설립을 자유롭게 보장하면서 종교법인의 사업을 감독 또는 통제할 수 있는 '인가주의'의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여기서 법인설립에서 '인가주의'라 함은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설립이 허가가 되는 허가주의와 달리 주무관청의 인가를 요하는 입법주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이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한 단체에 대하여 반드시 인가를 해주어야 하는 법률상의 구속을 받는다⁶⁰⁾. 전술한 바와 같이, 강학상 '인가'라 함은 '행정청이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 행위'로서 이른바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59)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 소재 회사 오대양의 공예품 공장 식당에서 사장과 종업원 등 32명이 집단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으로, 오대양 직원과 구원과 신도 등 32명은 손이 묶이거나 목에 끈이 감긴 채 시체로 발견됐다. 당시 수사 당국은 오대양 대표 박순자 씨가 1984년 공예품 제조업체인 오대양을 설립하고 종말론을 내세우며 사이비 교주로 행세하고, 사업 확장을 위해 빌린 사채 170억 원을 갚지 못하자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집단자살한 것이라고 수사를 종결했다. 또한 수사 당국은 1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오대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종교집단인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구원파)로 흘러들어갔던 것으로 보고, 기독교복음침례회 목사 격으로 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배후로 지목해 조사했지만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다 1991년 7월 구원과 신도 6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사건은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고, 유 전 회장은 신도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구속기소돼 1992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네이버 지식백과], 오대양사건 [五大洋事件],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5241&cid=43667&categoryId=43667> 최종방문일 2015.11.30.).

60) 윤철홍,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47권), 한국민사법학회, 2009.12. 750면.

인가를 받지 못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여야 한다⁶¹⁾. 왜냐하면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요건이기 때문이다⁶²⁾.

(나) 비영리성의 문제

법인은 일반적으로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구별이 되며, 사법인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사단법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경우 상법의 적용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우리 민법은 제39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제32조에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상법은 제5조 제2항『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에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상인으로 간주되어 상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의 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정의하는 이익분배설⁶³⁾과 수익사업을 법인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법인이라는 영리사업설⁶⁴⁾의 대립이 있다. 한편,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규정은

61) 김대정, “민법개정시안에서의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의 전환”, 『법학논문집』(제34집 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8면.

62) 김종보,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행정법연구』(제1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3.10. 326면.

63) 윤철홍,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47권), 한국민사법학회, 2009.12. 744-745면.

64) 윤철홍,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47권), 한국민사법학회, 2009.12. 744면.

영리사업설에 입각한 규정이라고 평가되고 있으며⁶⁵⁾, 이에 따라 학설도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⁶⁶⁾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도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수적으로 영리사업(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라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예시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교육이나 종교 등의 사업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사립학교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거나 특별법(종교법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민법의 개정안에서는 비영리사업의 예시문구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⁶⁷⁾.

5. 시사점

위에서 간략히 법인격 없는 단체(사단과 재단)에 관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법형성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만으로는 비영리법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 부족하고 향후에는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32조를 개정하여 비법인단체의 법인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입법이 필요하며,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는 일반비영리법인과 구분하여 종교단체의 해산 등에서 나타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등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 방안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65) 윤철홍,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47권), 한국민사법학회, 2009.12. 745면.

66) 송호영, “단체설립과 권리능력의 취득에 관한 일고”, 『인제임정평교수화갑기념논문집』, 법원사, 2001.9. 31-35면 ; 윤희렬, 『민법총칙』, 박영사, 2008. 73면 참조.

67) 김대정, “민법개정시안에서의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의 전환”, 『법학논문집』(제34집 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2면.

제 3 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의미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여기서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形象)을 봉안(奉安)하고 승려가 수행(修行)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1호). “전통사찰보존지”는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① 사찰 소유의 건조물[건물, 입목(立木), 죽(竹), 그 밖의 지상물(地上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와 연결된 그 부속 토지 ② 참배로(參拜路)로 사용되는 토지 ③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④ 사찰 소유의 정원·산림·경작지 및 초지 ⑤ 사찰의 존엄 또는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⑥ 역사나 기록 등에 의하여 해당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그 사찰의 관리에 속하는 토지 ⑦ 사찰 소유의 건조물과 이들 토지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동법 제2조제3호).

이 법에서는 “누구든지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을 존중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조의2).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과 관련하여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추천서를 첨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4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①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②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④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4조제2항). 더 나아가서 전통사찰 보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동법 제7조제1항 참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0조의2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 또한 전법용 건물 등의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동법 제14조), 전통사찰의 주지는 해당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5조).

이와 같이 전통사찰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칭)종교법인법처럼 나름대로 전통사찰의 보존과 종교의 자유를 규율하고 있으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전통사찰의 등록,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 4 장 비영리법인의 관련 법제개선 방안

제 1 절 개 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민법의 개정이 주목된다. 즉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을 사단과 재단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일반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무상 비영리법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있어서 일반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은 구분하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비영리법인의 경우는 민법을 개정하여 설립에 있어서 보다 용이하게 하고 종교법인보다는 좀더 자유롭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합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종교법인의 경우 설립과 관리 등에 있어서는 일반비영리법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투명하고 엄격한 관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종교의 자유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사찰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률(‘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어서 이를 살펴보고, 일반비영리법인에 관하여는 2014년 정부의 민법일부 개정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종교법인에 관하여는 (가칭)종교법인법을 제정하여 일반비영리법인과 달리 규율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2014년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1. 개 요

정부는 2014년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119)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제안이유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 운영의 자유를 증진시켜 법인 설립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 첫째,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였다(안 제32조). 즉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현행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과도하게 개입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요건도 규정하지 아니한 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인가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법인 설립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둘째, 정관의 변경을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에서 ‘인가사항’으로 전환하였다(안 제42조 및 제46조). 즉 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한 것에 맞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도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셋째, 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안 제48조)하였다. 즉 현재는 법인이 설립된 때 출연재산이 법인의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물권 변동에 있어 등기 등의 요건을 요하는 형식주의와 배치되어, 재산 소유관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법인 출연재산의 권리변동에 등기가 필요하면 그 요건을 갖춘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되도록 하되, 설립자의 사망 후에 재단법인이 성립하는 경우 출연에 관하여는 그의 사망 전에 재단법인이 성립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출연재산은 등기 등의 요건을 갖추면 설립자가 사망한 때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비영리법인에 관한 주요 쟁점과 개선사항

(1) 주요 쟁점

(가) 인가주의의 도입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민법 제32조의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인가주의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인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문제된다.

또한 정해진 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법인 설립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한다면 인가를 해주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일반적으로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법의 적용을 받는데, 사단법인은 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의 경우 본질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⁶⁸⁾ 우리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재단법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다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을 구별

68) 윤철홍,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47권), 한국민사법학회, 2009.12. 749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허가주의’와 달리 ‘인가주의’ 하에서는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의 인가가 허가주의 하에서의 재량행위에서 기속재량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허가주의’하에서는 인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즉 설립의 목적이 서로 다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인가요건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3인이상의 사원을 등록 요건으로 규정

우리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사원수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2인이상의 사원이 있을 경우 법인의 설립도 가능하고, 사단의 구성원이 1인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법인격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인격의 남용여부는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⁶⁹⁾ 다만 “사단이 조합과 달리 구성원의 상호적인 관계에서 벗

69)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8.9.11. [2007다90982]).

어나 사단의 독자적인 소유와 활동을 갖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구성원을 필요로 한다. 다수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단은 법인격을 취득했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성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다⁷⁰⁾.

한편, 우리 상법은 2001년 개정⁷¹⁾을 통하여 1인의 발기인으로도 사단법인인 주식회사의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회사와 정반대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2인 이상의 구성원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원의 최소인원을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다면 몇 명의 최소인원을 규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며, 2인의 사원을 가지고 사단법인이 설립될 경우 결국 사단의 의사결정이 만장일치제를 요구하게 되는 점은 부당할 수 있다.⁷²⁾ 이러한 차원에서 2014년 정부의 민법일부개정안에서는 3인 이상의 최소한의 사원을 요건으로 하였다.

(라)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재산 보유를 요건으로 누락

우리 민법 제43조(재단의 설립)에서 “일정한 재산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는 재산의 출연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민법 제40조 제4호에서 정관작성시 그 기재사항에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규정하고, 민법 제49조

70)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253면.

71) 2001.7.24. 법률 제6488호

72) 김대정, “민법개정시안에서의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의 전환”, 『법학논문집』 (제34집 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3면.

제6호 및 동조 제7호에서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자산의 총액 및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민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산이 없는 사단법인의 설립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법 체제에서 대부분의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있어서 심사기준 중 하나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⁷³⁾. 또한 법인이 정관에 따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이런 경우 우리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사단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 규정은 사단법인도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을 보유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었다⁷⁴⁾.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인가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법인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재산은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재산규정을 삭제하였다.

(마) 기타 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였을 것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종전의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될 경우 각각의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14년 정부의 민법일부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다.

73) 문화관광부 종교관계법인 행정지침 제8조(법인설립허가 심사기준) 제2호

74) 김대정, “민법개정시안에서의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의 전환”, 『법학논문집』 (제34집 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5면.

(바) 인가거부 처분의 제한

2014년 정부의 민법일부개정안은 주지하였듯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사전개입을 할 수 있는 ‘인가주의’를 도입하였고, 그 기속행위로서의 인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와 더불어 주무관청이 인가요건을 갖춘 인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인가주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인가신청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 기타 사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

(사) 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

한편, 행정행위상의 취소는 “일단 행하여진 행정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행정행위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철회라 함은 “유효한 행정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서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⁷⁵⁾. 따라서 민법 일부개정(안)에서 일정한 요건하에서 설립이 인가된 경우 설립인가 자체는 유효하지만, 후에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에 한하여 법인의 설립 인가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설립인가의 경우 취소가 아닌 철회라는 용어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현행 민법 제38조에서는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 법인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2014년 정부의 민법일부개정안에서는 기속행위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인가주의’를 도입한 개정으

75) 김대정, “민법개정시안에서의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의 전환”, 『법학논문집』 (제34집 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8면.

로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아울러 현행 민법에서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익”의 개념이 국회의 입법절차를 통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괄하는 개념이어서⁷⁶⁾ 주무관청이 공익의 침해라는 명분하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민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여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무관청의 재량권을 제한하였다.

(2) 법제개선 사항

2014년 정부의 민법일부개정안에서는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제32조와 제38조의 개정이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민법 제32조의 개정안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그 개선내용으로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① 사원이 되려는 3인 이상의 사람이 있을 것, ② 정관이 있을 것, ③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및 ④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민법개정안 제32조제1항). 둘째,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① 정관이 있을 것, ②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것, ③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및 ④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개정안 제32조제2항). 셋째, 주무관청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이들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면 인가하도록 하였다.

76)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8. 53면.

민법 제38조의 개정안에서는 법인 설립인가의 취소로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그 개선내용으로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설립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개정하였다.

<2014년 정부의 민법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민 법(현 행)	민 법(개정안)
<p>第32條(非營利法人의設立과許可) <u>學術, 宗教, 慈善, 技藝, 社交其他營利아닌事業을目的으로하는 社團또는財團은主務官廳의許可를얻어이를法人으로할수있다</u></p>	<p>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인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원이 되려는 3인 이상의 사람이 있을 것 2. 제40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 <p>②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3조에 따라 작성된 정관이 있을 것 2.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4. 그 밖에 법인 설립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였을 것 <p>③ 주무관청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p>

민 법(현 행)	민 법(개정안)
	<p>추여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사항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면 인가하여야 한다.</p>
<p>第38條(法人의設立許可의取消) 法人이目的以外의事業을하거나設立許可의條件에違反하거나其他公益을해하는行爲를한때에는主務官廳은그許可를取消할수있다</p>	<p>제38조(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인설립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p>

제 3 절 종교법인에 관한 법제화 방안

1. 개 요

(1) 종교법인법의 제정 여부

2014년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한 인가를 도입하고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4년 민법 일부개정안 만으로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 형태의 종교법인도 함께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종래 종교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과 동법규로 규율받기에는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종교법인의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4년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안과 별도로 종교법인만을 규율하는 (가칭)종교법인법의 제정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종교법인법과 우리나라의 민법 및 관련 대법원의 판례 등을 참조하여 (가칭)종교법인법의 제정방안으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종교의 의미

우리 헌법상 종교의 개념은 종래 일반적으로 그 대상이 초월적 성격을 가지며 그 내용이 신앙이라고 이해된다⁷⁷⁾. 종교에서 그 대상은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를 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신앙이나 확신 등의 일정한 심리적이고 정신적 자세를 수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초인간적인 숭고함이나 위대한 것을 외경하는 정의에 의거 이것을 인격화하고 신앙기원 및 축복이나 해탈, 구제를 얻기 위한 봉사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⁷⁸⁾,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자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종교단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⁷⁹⁾.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이나 초월성에 대한 관념은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종교의 개념 정의는 첫째, 그 개념이 명확하여 안정적으로 법해석의 기초를 이루고 판결에 원용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그 개념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현상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모두를 포섭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하고, 넷째, 그 정의는 종교학이나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법학적 개념이어야 한다는 주장⁸⁰⁾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교는 신이나 초월적 존재 등에 대한 믿음이나 절대적 의존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소위 ‘유사종교’나 ‘신흥종교’ 등을 포함하여,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원불교 등과 함께 유교나 무속도 종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77) 송기춘, “종교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헌법학연구』(제12권 제5호), 2006.12. 115면.

78) 송기춘, “종교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헌법학연구』(제12권 제5호), 2006.12. 116면에서 재인용(이희승편저,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1994).

79) 박해성,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민사판례연구』(제19집), 1997. 583면.

80) 송기춘, “종교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헌법학연구』(제12권 제5호), 2006.12. 116-117면.

있다⁸¹⁾. 그러나 무교나 무속신앙의 경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로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무속의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의 법인설립 신청에 있어서의 종교법인 설립에 관한 민원 발생시 종교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이러한 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철학, 사상, 참선, 민속의 목적을 가지고 종교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교법인의 설립을 인가하여 주는 것은 실무상 어렵고, 이에 대한 심사는 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총 칙

(1) (가칭)종교법인법의 제정 목적

이 제정안에서는 종교단체⁸²⁾에 대한 재산의 소유와 그 관리 및 관련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종교 단체가 예배 시설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유지 운영 및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법률상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정안에서는 헌법 제20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즉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이 제정안에 따른 행정기관의 관리 및 감독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며, 종교법인의

81) 하지만 현재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무교나 무속신앙의 경우 종교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윤철홍, “종교단체의 법인화”, 『비교사법』(제15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12. 130면).

82) 이 제정안에서는 종교단체에 대한 개념정의의 하는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 제정안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을 어느 정도 분명히 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교단체란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고 의식 행사를 개최하고 신자를 교화 및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찰, 교회 및 그 밖에 유사한 단체와 이들 단체를 포괄하는 교파, 종파, 교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로 정의할 수 있다.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규정에서도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고, 교리를 전파하거나 의식을 수행하거나 또는 그 밖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 법인격 부여 및 관할청

이 제정안에 따라 종교단체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이 제정안에서 종교법인은 ‘이 법에 따라 법인으로 성립한 종교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즉 민법 제31조『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와 유사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제정안에서 종교법인의 관할기관은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⁸³⁾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정책상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할청으로 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교파, 종파, 교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하는 경우 등).

(3) 종교법인의 사업

이 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종교법인에게 공익사업과 그 밖에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종교법인은 공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 종교법인은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공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만, 이 경우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당 종교법인, 해당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단체 또는 해당 종교법인이 지원하는 종교법인

83) 여기서 종교법인의 주소는 민법 제36조『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처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나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요구된다(일본의 종교법인법 제6조 참조).

(4) 종교법인의 등록

이 제정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종교법인은 등록하여야 법인으로 성립되며, 종교법인은 의무적 등기사항 이외에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등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제정안에서 종교법인의 능력은 민법 제34조『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처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목적의 범위내’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며,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⁸⁴⁾도 참고할 수 있다. 즉 이 법안에서는 종교법인이 이 제정안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5) 종교법인의 책임

이 제정안에서 종교법인의 책임은 민법 제35조제1항『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및 제2항『법인의 목적 범위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

84) 대판 1991.11.12. [91다8821]

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과 유사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종교법인은 대표자, 그 밖의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종교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대표자 및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책임 임원, 그 업무대행자, 또는 그 밖에 책임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3. 설 립

(1) 설립절차

이 제정안에서 종교법인의 설립은 민법 제40조⁸⁵⁾에서 정한 절차와 정관 기재사항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종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만들고 그 정관에 대해 관할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종교법인의 등록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민법의 법인 등록절차와 유사한 내용으로 둘 수 있다.

(2) 성립 시기

이 제정안에서 종교법인의 성립시기는 민법 제33조『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처럼 규정할 수 있다. 즉 종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85) 민법 제40조에서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정관에는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 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관 리

(1) 대표자의 선임 및 업무

이 제정안에서는 민법 제57조『법인은 상설적 필요기관으로 이사를 두어야 한다』에서처럼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종교법인의 경우도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대표자 또는 책임임원 등)를 두도록 할 수 있으며, 대표자는 종교법인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종교법인의 경우도 민법 제58조제2항『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처럼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종교법인의 사무는 대표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그 대표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고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종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책임임원 및 그 밖에 직무대행자의 선임 자격에 대하여 민법보다 강화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종교법인의 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종교법인의 경우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③ 일정한 형사처벌(예컨대, 금고 이상)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마치고 일정기간 내(예컨대, 3년 이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대표자, 책임임원 및 그 밖에 업무대행자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요구된다.

(2) 그 밖의 책임임원 등

이 제정안에서는 민법 제63조『법원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처럼 임시임원(또는 책임임원)을 둘 수 있다. 즉 이 제정안에서 종교법인의 대표자가 종교

법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대표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60조의2 제1항『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처럼 직무대행자를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즉 ① 대표자 또는 책임임원이 사망 또는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그 후임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② 대표자 또는 책임임원이 질병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두도록 할 수 있다.

(3) 재산 관리

이 제정안에서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보다 구체적인 검사 및 감독 사항과 재산 관련 기록의 공개 등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즉 종교법인에게 재산 목록 등의 작성, 배치, 열람 및 제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여 종교법인의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5. 정관의 변경

이 제정안에서 종교법인의 정관 변경은 민법 제45조제3항『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의 재단법인 정관 변경처럼 관할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민법 제45조제3항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을 인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와 같은 입법이 타당하다.⁸⁶⁾

86)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6. 합 병

이 제정안에서는 민법과 달리 구체적으로 종교법인 간에 서로 합병할 수 있는 여지도 규정할 수 있다. 즉 둘 이상의 종교법인이 서로 합병하여 하나의 종교법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관련 종교법인의 합병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조항도 규정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부록 3] 일본의 종교법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참조).

7. 해 산

이 제정안에서 종교법인의 해산은 민법 제77조제2항『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에 따른 사단법인의 해산의 경우처럼 종교법인의 경우도 임의로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 민법상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의미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해산을 의결하지 못하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8조). 이 제정안에서 종교법인의 해산 사유는 ①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② 합병(합병 후 존속하는 종교법인은 제외한다), ③ 파산 절차 개시 결정, ④ 관할청의 등록의 취소, ⑤ 법원의 해산 명령, ⑥ 종교 단체를 포괄하는 종교법인에 있어서는 그 포괄하는 종교 단체의 소멸 등의 경우에도 해산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 밖에 이 제정안에서 종교법인의 해산절차에 관한 사항, 임의 해산의 인가 및 해산시기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파산 절차의 개시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청산중의 종교법인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성질에 있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격은 인가라고 보아야 한다 (대판(전합) 1996.5.16. [95누4810]).

의 능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81조『해산한 법인은 청산(清算)의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처럼 해산한 종교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청산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필요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82조『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및 청산인의 권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민법 제87조부터 제96조까지)과 유사한 조항을 마련하여 청산인의 권한과 업무 등을 규정하는 것도 요구된다.

8. 등 록

(1) 종교법인의 등록

이 제정안에서는 민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의 사단법인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종교법인의 등록 및 등록절차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예비용 건물 및 부지의 등기

우리 민법은 비법인단체의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은 제26조제1항에서 『중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서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등기능력을 인정한다. 이 제정안에서는 종교법인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종교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한 세부적인 등기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자세한 것은 [부록 3] 일본의 종교법인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참조).

9. 종교법인의 등록심의 위원회

이 제정안에서는 종교단체의 등록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등록 및 정관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2014년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안의 비영리사단법인과 달리 종교법인의 경우 종교법인 등록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가에 대한 실질적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법인 등록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제정안에 따른 종교단체의 법인등록 및 정관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종교단체 등록심의 위원회에 관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조항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자세한 것은 [부록 3] 일본의 종교법인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참조).

10. 기 타

이상과 같은 주요 입법사항 이외에도 관할청이 종교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일본의 종교법인법처럼 국가의 정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항이 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 제정안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관할청이 해당 종교법인에 대해서 보고 또는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일본의 종교법인법 제78조 참조). 또한 이 제정안에서는 종교법인이 공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여 이 제정안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도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일본의 종교법인법 제79조 참조).

제 4 절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선

2014년 정부의 민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관련한 민법 제32조의 개정(안)에 맞게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도 역시 필요하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은 모두 허가주의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인가주의로 전환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제2호『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및 제3호『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는 이미 민법 개정안 제32조에 반영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4조 제3항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민법 제32조 개정(안)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되는 사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 3 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u>설립허가</u> 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	제 3 조(설립인가)의 신청)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u>설립인가</u> 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

현 행	개정(안)
<p>호서식에 의한 <u>법인설립허가신청서</u>(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p> <p>1.~6. (생략)</p> <p>제 4 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p> <p>1. <u>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u></p> <p>2. <u>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u></p> <p>3. <u>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u></p>	<p>호서식에 의한 <u>법인설립인가신청서</u>(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p> <p>1.~6. <현행과 같음></p> <p>제 4 조(설립인가) ① 주무관청은 <u>법인설립인가신청</u>의 내용이 법 제32조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u>인가</u>한다.</p> <p>1. <삭 제></p> <p>2. <삭 제></p> <p>3. <삭 제></p>

제 4 절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선

현 행	개정(안)
<p>② 주무관청은 <u>법인설립허가신청</u>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u>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u>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허가</u>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u>법인설립허가증</u>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u>법인설립허가대장</u>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u>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u>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제 5 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u>설립허가</u>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 6 조(정관변경의 <u>허가 신청</u>) 『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u>별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u>(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p>	<p>② 주무관청은 <u>법인설립인가신청</u>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u>인가</u>하여야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인가</u>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u>법인설립인가증</u>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u>법인설립인가대장</u>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 <삭제></p> <p>제 5 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u>설립인가</u>를 받은 자는 그 <u>인가</u>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 6 조(정관변경의 <u>인가 신청</u>) 『민법』 제42조제2항·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u>별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u>(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p>

제 4 장 비영리법인의 관련 법제개선 방안

현 행	개정(안)
<p>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4. (생 략)</p> <p>제 9 조(<u>설립허가</u>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u>설립허가</u>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4. <현행과 같음></p> <p>제 9 조(<u>설립인가</u>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u>설립인가</u>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 중에서 주요 입법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우리 사회의 다원화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역할이 늘어나고 법인화를 통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비법인형태의 단체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립허가를 얻어 마치 공인단체처럼 활동을 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단체의 사회활동이 증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비영리단체의 공익성을 증대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법개선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민법 및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등록 등을 규율하여 비영리법인의 공익성과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이 필요하고 그 개선사항을 적시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민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관련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종교단체의 법인화에 관한 법제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민법의 개정과 (가칭)종교법인법의 제정방안을 고찰하는 동시에 민법의 비영리법인 인가주의 도입에 따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선 사항도 제안하였다.

참고 문헌

I. 문헌

- 강태성, “법인에 관한 민법개정방향”, 『법조』(제538호), 2001.7.
- 고병철 외 5인,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2.
- 김교창, “민법총칙 중 법인에 관한 개정의견”, 『법조』(제548호), 2002.
- 김대정, “민법개정시안에서의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의 전환”, 『법학논문집』(제34집 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김동회, 『행정법 I』, 박영사, 2008.
- 김종보,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행정법연구』(제1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3.10.
- 김철용, 『행정법 I』, 박영사, 2008.
- 박규태, “국가신도란 무엇인가”, 『종교연구』(제29집), 한국종교학회, 2002.
- 박해성,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 『민사관례연구』(제19집), 1997.
- 배원기, “일본의 비영리(공익법인)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제11권 제1호), 2012.
- 송기춘, “종교관련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헌법학연구』(제12권 제5호), 2006.12.
- 송호영, “단체설립과 권리능력의 취득에 관한 일고”, 『인제임정평교수화갑기념논문집』, 법원사, 2001.9.

참 고 문 헌

- 송호영, “법인설립에 있어서 등기·등록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비교사법』(제16권 4호(통권47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12.
- 윤철홍, “비영리법인설립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민사법학』(제47권), 한국민사법학회, 2009.12.
- 윤철홍, “종교단체의 법인화”, 『비교사법』(제15권 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12.
- 윤형렬, 『민법총칙』, 박영사, 2008.
-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민사법학』(제5권 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
- 上別府 正信, “일본국헌법과 종교법인법에 본 일본의 종교정책·종교행정과 그 문제점”, 『종교와 문화』(제21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11.
- 渡部 蒔, “宗教法人法”, きょうせい, 2001.

II. 참고 자료

- 국세청 법인세 신고 현황
(http://stats.nts.go.kr/national/major_detail.asp?year=2015&catecode=A08002)
- [네이버 지식백과] 오대양사건 [五大洋事件](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5241&cid=43667&categoryId=43667>)
-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5.1.
(http://www.mcst.go.kr/web/s_data/corporation/corpList.jsp)

부 록

[부록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 현황(총괄표)

[부록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 현황(총괄표)

(2013년 7월 24일 현재)

소관별		구 분		계	특수 법인	재단 법인	사단 법인
		합	계				
		합	계	1,316	44	290	982
문화 체육 관광부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		1	-	1	-
		문화 콘텐츠 산업실	문화산업정책과		25	1	2
	영상콘텐츠산업과			62	4	3	55
	게임콘텐츠산업과			29	1	3	25
	대중문화산업과			67	1	3	63
	저작권정책과			9	1	-	8
	저작권산업과			9	-	-	9
	계			201	8	11	182
	문화 정책국	문화여가정책과		57	-	10	47
		국어정책과		17	1	4	12
		지역민족문화과		123	2	21	100
		국제문화과		58	-	5	53
		계		255	3	40	212
	예술국	예술정책과		133	-	46	87
		공연전통예술과		163	2	29	132
시각예술디자인과			53	-	4	49	
문화예술교육과			13	1	-	12	
계			362	3	79	280	
문화 체육 관광부	관광국	관광정책과		15	1	-	14
		관광산업과		27	-	-	27
		국제관광과		12	-	2	10
		관광개발지원과		7	-	-	7
	계		61	1	2	58	

부 록

소관별		구 분	계	특수 법인	재단 법인	사단 법인	
	도서관정 보정책 기획단	도서관정책과	16	-	5	11	
		박물관정책과	21	-	9	12	
		계	37	-	14	23	
	종무실	종무1담당관	22	-	10	12	
		종무2담당관	44	-	33	11	
		계	66	-	43	23	
	체육국	체육정책과	49	2	2	45	
		체육진흥과	22	-	3	19	
		국제체육과	13	8	3	2	
		장애인체육과	6	5	-	1	
		계	90	15	8	67	
	미디어 정책국	미디어정책과	26	3	8	15	
		방송영상광고과	18	-	3	15	
		출판인쇄산업과	22	5	6	11	
		계	66	8	17	41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	전당기획과	1	1	-	-	
	국민소통실	홍보정책과	8	-	1	7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1	-	-	1
		문화재 정책국	정책총괄과	7	1	1	5
무형문화재과			23	-	1	22	
발굴제도과			63	-	61	2	
안전기준과			2	-	-	2	
문화재 보존국		보존정책과	10	-	1	9	
		유형문화재과	14	-	3	11	
		천연기념물과	20	-	1	19	
		수리기술과	11	1	3	7	

[부록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비영리법인 현황(총괄표)

소관별		구 분	계	특수 법인	재단 법인	사단 법인
	문화재 활용국	활용정책과	6	1	1	4
		궁능문화재과	2	-	-	2
		국제협력과	4	2	1	1
		근대문화재과	4	-	-	4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총무과	1		1	-
		계	168	5	74	89

[부록 2] 광주광역시 종교법인의 설립허가 현황

법인 명칭	허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사단법인 선한교육	2014-01-17	기독교적인 가치관 교육, 기독교사 전문성제고 및 지원, 교류, 기독교대안교육 및 문화복지 사업
사단법인 광주예경미션협회	2013-06-21	광주지방경찰청 직원 및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에 기독교 복음 전파 및 후원, 외국인 선교사 초청 영어회화교육
사단법인 대한기독교연합회	2013-02-06	대한기독교 연합회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 복음의 세계전파, 기독교정신바탕 복지서비스 제공
사단법인 생활불교협의회	2011-04-14	전통불교문화진흥사업, 진각국사기념사업, 인간성회운동 등
사단법인 호남선교협의회	2009-01-06	
사단법인 빛고을선교회	2008-12-16	
사단법인 대한불교 약사여래종	2008-10-10	
사단법인 한국불교중앙조계종	2008-07-03	
사단법인 국조승모회	2007-08-06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의 계승을 목적
사단법인 광주불교교육원	2007-07-13	
사단법인 광주불교사암연합회	2006-12-29	
사단법인 광주전통불교연신회	2006-09-07	
사단법인 전남지방경찰청 경선교회	2006-08-15	
사단법인 겨자씨선교회	2006-07-24	

부 록

법인 명칭	허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한국불교조동종사암연합회	2004-05-21	
사단법인 자비나눔	2013-12-02	무각사 신도회 법회주관 및 전통불교의식 연구 및 전승,벼룩시장 통한 자비나눔 전파,법인관련 출판
재단법인 새밝선교회유지재단	2009-06-17	새밝선교회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유지관리 및 선교활동 등
재단법인 온누리헝시바선교재단	2008-08-26	
대한불교 진여원	2008-07-11	교세확장위한포교활동,간행물발간배포,불교이타정신기반제반서비스제공
재단법인 천주의성요한수도회	2007-10-05	천주의성요한수도회재산유지관리, 수도회의선교활동,자선,복지,의료사업을위한자산의공급관리
재단법인 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2007-07-02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재산유지관리,전교,사회복지사업, 종교교육,자선사업 등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2007-01-31	천주교광주대교구에속한모든교회의운영,선교,사회복지사업 등
금륜회	2003-03-28	
광주향교재단	1987-07-10	광주향교재단 재산유지관리 등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유지재단	1976-03-02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노회 재산유지관리 등

[부록 3] 일본의 종교법인법(宗教法人法)

(1951년 4월 3일 법률 제126호) 최종 개정: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이 법의 목적) ① 이 법률은 종교 단체가 예배 시설 기타 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유지 운영 및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종교 단체에 법률상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모든 국정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에 기준하여 법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집단 또는 단체가 그 보장된 자유에 근거하여 교리를 전파하고 의식 행사를 갖고 기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종교 단체의 정의) 이 법률에서 “종교 단체”라 함은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고 의식 행사를 열고, 신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다음에 제시한 단체를 말한다.

1. 예배 시설을 갖춘 신사, 사원, 교회, 수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2. 전호에서 제시하는 단체를 포괄하는 교파, 종파, 교단, 교회, 수도회, 교구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제 3 조(경내 건물 및 경내 지역의 정의) 이 법률에서 “경내 건물”이라 함은 제1호에 열거된 같은 종교법인의 전조에 규정하는 목적에 필요한 해당 종교법인으로 고유의 건물 및 공작물을 말하며, “경내지”라 함은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시되어 있는 같은 종교법인의 동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필요한 해당 종교법인 고유의 토지를 말한다.

1. 본전, 배전, 본당, 회당, 승당, 승원, 신자 수행소, 사무소, 고리, 교직사, 종무청, 교무원, 교단 사무소 기타 종교법인의 전조에 규정하는 목적에 제공되는 건물 및 공작물(부속 건물 및 공작물을 포함한다.)
2. 전호 건물 또는 공작물이 존재하는 일획의 토지(입목 대나무 기타 건물 및 공작물 이외의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의 조에서도 같다)

부 록

3. 참배로 이용되는 토지
4. 종교 의식 행사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 (신도식 제사지, 불공전, 수도 경목지 등을 포함한다.)
5. 정원, 산림 기타 품위 또는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지
6. 옛 기록 등에 의해서 밀접한 연고가 있는 토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물, 공작물 또는 토지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토지

제 4 조(법인격) ① 종교 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될 수 있다.

② 이 법률에서 “종교법인”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이루어진 종교 단체를 말한다.

제 5 조(관할청) ① 종교법인의 관할 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로 한다.

② 다음에 열거된 종교법인인 경우는 그 관할 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문부과학대신이 한다.

1. 기타 도도부현 경내 건물을 갖춘 종교법인
2. 전호에서의 종교법인 이외의 종교법인으로서 동 호의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것
3. 제2호에 제시하는 것 외에 다른 도도부현에 있는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법인

제 6 조(공익사업 기타 사업) ① 종교법인은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종교법인은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공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당 종교법인, 해당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 단체 또는 해당 종교법인이 원조하는 종교법인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만 한다.

제 7 조(종교법인의 주소) 종교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등기의 효력) 종교법인은 제7장 제1절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에 관련하여서는 등기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등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 9 조(등기에 관한 신고) 종교법인은 제7장 규정에 의한 등기(관할 기관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제외한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 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만 한다.

제10조(종교법인의 능력) 종교법인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가진다.

제11조(종교법인의 책임) ① 종교법인은 대표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종교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행위를 한 대표임원 기타 대표자 및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책임 임원, 그 대무자 또는 임시 책임 임원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2 장 설 립

제12조(설립 절차) ① 종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대해 관할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하려고 하는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종교법인 비종교법인의 별도
5. 대표 임원, 책임 임원, 대무자(代務者), 임시 대표 임원 및 임시 책임 임원의 호칭 자격 및 임면 및 대표 임원은 그 임기 및 직무 권한, 책임 임원에 대해서는 그 수, 임기 및 직무 권한 대무자에 대해서는 그 직무 권한에 관한 사항
6. 전호에서 제시하는 것 외에 의결, 자문, 감사 기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관한 사항
7.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관리 운영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수익 처분의 방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부 록

8. 기본 재산, 보물 기타 재산의 구성, 관리 및 처분(제23조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예산, 결산 및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9. 규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 사유, 청산인의 선임 및 잔여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제5호에서 전호까지 열거된 사항에 대해 다른 종교 단체를 제약하거나 다른 종교 단체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
13. 전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그 사항
 - ② 종교법인의 공고는 신문 또는 당해 종교법인의 기관지에 게재하고 해당 종교법인의 사무소의 게시장에 게시하고 기타 해당 종교법인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주지시키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한다.
 - ③ 종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의 최소한 1개월 전에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규칙 방안의 요지를 보여 종교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를 전항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의 인증 신청)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 신청서 및 규칙 2통에 다음에 제시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종교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 신청인이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대표 임원 및 정수의 과반수에 맞는 책임 임원으로 취임 예정되어 있는 자의 수락서

제14조(규칙의 인증) ① 관할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부기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한 후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사안이 아래에 제시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규칙을 인증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인

정된 때 또는 그 접수한 규칙 및 그 첨부 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규칙을 인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종교 단체일 것
 2. 해당 규칙이 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그 설립 절차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② 관할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칙을 인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신청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스스로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경우에 관할기관이 문부과학대신인 때에는 당해 관할 기관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칙을 인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종교법인 심의회에 자문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관할 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결정을 하고 또한 인증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인증서 및 인증한 취지를 부기한 규칙을 교부하고 인증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그 이유를 부기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관할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 신청자에게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을 규칙에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성립시기) 종교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 3 장 관 리

제18조(대표 임원 및 책임 임원) ① 종교법인에는 3명 이상의 책임 임원을 두고, 그 중 한 명을 대표 임원으로 한다.

② 대표 임원은 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책임 임원 서로간의 선출에 의해 정한다.

부 록

- ③ 대표 임원은 종교법인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④ 책임 임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교법인의 사무를 결정한다.
- ⑤ 대표 임원 및 책임 임원은 항상 법령, 규칙 및 해당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 단체가 해당 종교법인과 협의하여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이러한 법령, 규칙 또는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 한 종교적 약관 훈련 관습과 전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종교법인의 업무 및 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고 그 보호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⑥ 대표 임원 및 책임 임원의 종교법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은 해당 임원의 종교적 기능에 대한 어떠한 지배권, 다른 권한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제19조(사무의 결정) 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종교법인의 사무는 책임 임원의 정수의 과반수로 결정, 그 책임 임원의 의결권은 각각 평등하게 한다.

제20조(대무자) 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무자를 두어야 한다.

- 1. 대표 임원 또는 책임 임원이 사망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공석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그 후임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 2. 대표 임원 또는 책임 임원이 질병 기타 사유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대무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 임원 또는 책임 임원에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21조(임시 대표 임원 및 임시 책임 임원) ① 대표 임원은 종교법인과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대표 임원을 선정해야 한다.

② 책임 임원은 그 책임 임원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의결권이 없다. 이 경우 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의결권을 가지는 책임 임원의 인원수가 책임 임원의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반수에 도달할 때까지의 인원수 이상의 임시 책임 임원을 선정해야 한다.

③ 임시 대표 임원은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당해 대표 임원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임시 책임 임원은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 임원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표임원, 책임임원, 대무자, 임시대표임원 또는 임시책임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3.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칠 때까지 또는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의 자

제23조(재산 처분 등의 공고) 종교법인(종교 단체를 포괄하는 종교법인을 제외한다)은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경우(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을 때에는 제19조 규정)를 제외하고 그 행위의 최소한 1개월 전에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요지를 나타내고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가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사소한 것일 경우 또는 제5호의 행위가 일시적 기간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제한이 있다.

1. 부동산 또는 재산 목록에 열거 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
2. 차입(해당 회계 연도의 수익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을 제외한다) 또는 보증
3. 주요 경내 건물의 신축, 개축, 증축, 이축, 제거 및 현저한 재배치
4. 경내 지역의 현저한 재배치
5. 주요 경내 건물의 용도나 경내 지역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이들을 해당 종교법인의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제24조(행위의 무효) 종교법인의 경내 건물 또는 경내 지인 부동산 또는 재산 목록에 열거 된 보물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단, 선의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다.

제25조(재산 목록 등의 작성, 배치, 열람 및 제출) ① 종교법인은 그 설립(합병으로 인한 설립을 포함한다) 시 재산 목록을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산 목록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종교법인의 사무소는 항상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1. 규칙 및 인증서
2. 임원 명단
3. 재산 목록 및 손익계산서 및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차 대조표

4. 경내 건물 (재산 목록에 기재되어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5. 책임 임원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사에 관한 서류 및 사무 처리부
6.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서류
 - ③ 종교법인은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으로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종교법인의 사무소에 비치된 동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를 열람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하며, 그 열람 청구가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종교법인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교법인의 사무소에 비치된 동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서류의 사본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관할 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종교법인의 종교적 특성과 관습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방해 할 수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제 4 장 규칙의 변경

- 제26조(규칙의 변경 절차) ① 종교법인은 규칙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을 위한 절차를 하고 그 규칙의 변경에 대해 관할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교법인이 해당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 단체와의 관계 (이하 “피 포괄적 관계”라 한다)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관계의 폐지에 관한 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해당 종교법인 규칙 중 해당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 단체가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그 권한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② 종교법인은 피 포괄적 관계의 설정 또는 폐지에 관한 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7조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 최소한 2개월 전에, 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규칙의 변경 방안의 요지를 나타내고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종교법인은 피 포괄적 관계의 설정 또는 폐지에 관한 규칙을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 제27조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 전에 해당 관계를 설정 하려고 하는 종교 단체의 승인을 받고, 당해 관

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동시에 그 관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종교 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종교 단체는 그 포괄하는 종교법인의 해당 종교 단체와 피 포괄적 관계의 폐지에 관한 규칙의 변경 절차가 전에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그 포괄하는 종교법인 관할 기관 및 문부과학 대신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27조(규칙 변경의 허가 신청) 종교법인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 및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 2통에 다음에 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그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규칙의 변경 결정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친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규칙의 변경이 피 포괄적 관계 설정에 관한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규칙의 변경이 피 포괄적 관계의 폐지에 관한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28조(규칙의 변경 인증) ① 관할 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을 접수 한 경우, 그 접수일을 명기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해당 종교법인에 통지한 후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사안이 다음에 제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해당 규칙의 변경 인증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경 절차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
- ②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결정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 중 『인증 한 취지를 부기한 규칙』은 『인증 한 취지를 부기 한 변경하려는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9조 삭제

부 록

제30조(규칙의 변경시기) 종교법인 규칙의 변경은 해당 규칙의 변경에 관한 인증서를 교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합병에 따른 경우의 특례) 합병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종교법인이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이 장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 장 합 병

제32조(합병) 둘 이상의 종교법인은 합병하여 하나의 종교법인이 될 수 있다.

제33조(합병의 절차) 종교법인은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 그 합병에 대해 관할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① 종교법인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외부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합병 계약의 방안 요지를 나타내고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병하려고 하는 종교법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재산 목록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만 한다.

③ 합병하려고 하는 종교법인은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그 공고일로부터 2개월을 넘기지 않는 일정한 기간 내 주장하고자 하는 이의의 취지를 공고하고 또한 알고 있는 채권자에는 각 별도의 최고(알림, 공고, 전달 등)를 해야 한다.

④ 합병하려고 하는 종교법인은 채권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주장할 때에는 이를 변제하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 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신탁 회사 또는 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 기관에 상응하는 재산을 신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을 하여도 그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제외한다.

제35조 ① 합병에 있어 한 종교법인이 존속하고 다른 종교법인이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합병에 따라 규칙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후 존속하려는 종교법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화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합병에 있어 종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하고자 하는 각 종교법인이 선임한 자는 공동으로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규정하는 각 종교법인이 선임한 자는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의 최소한 두 달 전에,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규칙 안의 요지를 발표하여 합병에 대한 종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제26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합병하려고 하는 종교법인이 해당 합병에 따라 피 포괄적 관계를 설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동조 각 항 중 어휘는 해당 각 호로 제시하는 문구로 대체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 중 『해당 관계의 폐지에 관한 규칙의 변경』은 『해당 관계의 폐지에 관한 규칙의 변경 기타 당해 관계의 폐지』
2. 제2항 중 『제27조』는 『제38조 제1항』, 『해당 규칙의 변경 방안』은 『피 포괄적 관계의 설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3항 중 『제27조』는 『제38조 제1항』, 『전항』이라는 것은 『제34조 제1항』
4. 제4항 중 『피 포괄적 관계의 폐지에 관한 규칙 변경 절차』는 『피 포괄적 관계의 폐지를 수반 합병 절차』, 『전3항』은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

제37조 합병에 따라 제35조 제3항 또는 전조에서 준용하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는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와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다른 공고와 함께 할 때, 합병하려고 하는 종교법인 및 동항에 규정하는 각 종교법인이 선임한 자와 공동으로 해당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8조(합병의 인증 신청) ① 종교법인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 및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 2통에, 동조 제2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칙 2통에 다음에 제시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합병의 결정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후 성립하는 단체가 종교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35조 제3항 또는 제36조에서 준용하는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7. 합병에 따라 피 포괄적 관계를 설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6조에서 준용하는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은 합병하고자 하는 각 종교법인의 연명으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종교법인의 관할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려는 종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려고 하는 종교법인의 관할 기관에 해당 인증을 신청해야 관할청으로 된다.

제39조(합병의 인증) ① 관할 기관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을 접수 한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작성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해당 종교법인에 통지한 후 해당 신청과 관련되는 사안이 다음에 제시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합병의 인증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합병 절차가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질 것
 2. 해당 합병이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또는 규칙이 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해당 합병이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 후 성립하는 단체가 종교 단체가 된다.
- ②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결정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 중 『인증 한 취지를 부기

한 규칙』은 『당해 합병이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한 취지를 부기 한 변경하려는 사항을 나타내는 서류 또는 규칙』으로 대체한다.

③ 제1항 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교법인에 대한 관할 기관의 통지 및 인증서 등의 교부는 해당 인증을 신청한 종교법인 중 하나이면 된다.

제40조 삭 제

제41조(합병의 시기) 종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종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하는 종교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2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종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종교법인의 권리 의무 (해당 종교법인이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인가 기타 처분에 근거하여 갖는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 6 장 해 산

제43조(해산 사유) ① 종교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있다.

② 종교법인은 전항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규칙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합병(합병 후 존속하는 종교법인의 당해 합병을 제외한다)
3. 파산 절차 개시 결정
4.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기관의 인증의 취소
5.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해산 명령
6. 종교 단체를 포괄하는 종교법인에 있어서는 그 포괄하는 종교 단체의 소멸

③ 종교법인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여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임의 해산 절차) ① 종교법인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하려고 할 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 그 해산에 대해

부 록

관할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종교법인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을 하려고 할 때, 규칙으로 정하는 바(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외부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해산에 의견이 있으면 그 공고일로부터 2개월을 지나지 않는 일정한 기간 내에 주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종교법인은 신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주장할 때에는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해산 절차의 진행 여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제45조(임의 해산 인증의 신청) 종교법인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서에 다음에서 제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청에 제출하고 인증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해산의 결정에 대해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규칙에 달리 정함이 없을 때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제46조(임의 해산의 인증) ① 관할 기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수리일을 명기한 서면으로 그 취지를 해당 종교법인에 통지한 후 해당 신청에 관한 해산 절차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한 해당 해산의 인증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결정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4항 중 『인증서 및 인증한 취지를 부기한 규칙』은 『인증서』로 대체한다.

제47조(임의 해산의 시기) 종교법인의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은 해당 해산에 관한 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8조(파산 절차의 개시) ① 종교법인이 그 채무에 대하여 그 재산을 가진 값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대표 임원 또는 그 대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또는 직권으로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한다.

②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는 대표 임원 또는 그 대무자는 즉시 파산 절차 개시의 신청 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청산중의 종교법인의 능력) 해산한 종교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그 청산에 이르기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49조(청산인) ① 종교법인이 해산(합병 및 파산 절차 개시 결정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 한 때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해산 시 대표 임원 또는 그 대무자 이외의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 임원 또는 그 대무자가 청산인이 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되는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청산인이 부족하여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종교법인이 제43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원은 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④ 제22조의 규정은 종교법인의 청산인에 준용한다.

⑤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⑥ 종교법인의 책임 임원 및 그 대무자들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교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임한다. 종교법인의 대표 임원 또는 그 대무자가 청산인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⑦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법인의 대표 임원, 책임 임원 및 대무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해산에 의하여 퇴임한다.

제49조의2(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 직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 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9조의3(채권의 신청의 최고 등) 청산인은 그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적어도 3 번 공고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개월을 넘길 수 없다.

부 록

-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산에서 배제되며 취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단, 청산인은 알려져 있는 채권자를 제척할 수 없다.
- ③ 청산인은 알려져 있는 채권자에는 각 다른 그 신청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제49조의4(기간 경과 후의 채권의 신고) 전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한 채권자는 종교법인의 채무를 갚은 후 다시 권리의 귀속해야 할 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49조의5(청산 종교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의 개시) ① 청산 중에 종교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즉시 파산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청산인은 청산의 종교법인이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파산 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임무를 종료 한 것으로 한다.
 - ③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청산 종교법인이 이미 채권자에게 지불 또는 권리의 귀속할 자에게 인도한 것이 있는 때에는 파산 관재인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고 있다.

제49조의6(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 법원은 제49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종교법인이 당해 청산인에 지불 보수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청산인 (해당 종교법인 규칙에서 해당 종교법인의 재산 상황 및 임원의 직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을 두는 취지가 정해져있는 때에는 해당 청산인 및 해당 감사 기관)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제50조(잔여 재산의 처분) ① 해산한 종교법인의 잔여 재산의 처분은 합병 및 파산 절차 개시 결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규칙에 그 설정이 없을 때는 다른 종교 단체 또는 공익 사업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는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51조(법원의 감독) ① 종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의 감독에 속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언제든지 전항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감독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해 검사직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49조의6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직을 선임한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중 『청산인 (해당 종교법인 규칙에서 해당 종교법인의 재산 상황 및 임원의 직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을 두는 취지가 정해져있는 때에는 해당 청산인 및 해당 감사 기관)』은 『종교법인 및 검사직』이라고 본다.

⑤ 종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감독하는 법원은 관할 기관에 대해 의견을 요구 또는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⑥ 전항에 규정하는 관할 기관은 동항에 규정하는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1조의2(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종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의 감독 및 청산인에 관한 사건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51조의3 삭제

제51조의4(불복 신청의 제한) 청산인 또는 검사역의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 7 장 등 기

제 1 절 종교법인의 등기

제52조(설립 등기) ① 종교법인의 설립 등기는 규칙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설립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종류를 포함한다)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부 록

4. 해당 종교법인을 포괄하는 종교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종교법인과 비종교법인의 구분
5. 기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6. 대표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이름, 주소 및 자격
7. 규칙 경내 건물 또는 경내 지인 부동산 또는 재산 목록에 열거된 보물에 관한 제23조 제1호에 열거된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항
8. 규칙으로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
9. 공고의 방법

제53조(변경 등기) 종교법인에서 전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4조(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의 주된 사무소의 이전 등기) 종교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이전 한 때에는 2주 이내에 구 소재지에서는 이전 등기를 하고 신 소재지에서는 제5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5조 대표권을 가진 사람의 직무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하는 가처분 명령 또는 그 가처분 명령을 변경하고 혹은 취소 결정이 된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6조(합병 등기) 종교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에 관한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변경 등기를 하고 합병으로 해산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해산 등기를, 합병으로 설립하는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7조(해산 등기)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의 조에서도 같다)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이 해산한 경우나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해당 해산에 관한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경우에는 해당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종결의 등기) 종교법인의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청산 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9조(부설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부설사무소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부설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종교법인의 설립에 부설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다음 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
2. 합병으로 설립하는 종교법인이 합병 시 부설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합병에 관한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주 이내
3. 종교법인의 성립 후에 부설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부설사무소를 설치한 날부터 3주 이내

② 부설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설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새롭게 부설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등기하면 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부설사무소(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의 소재지

③ 전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3주 이내에 해당 부설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조(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의 부설사무소의 이전 등기) 종교법인이 그 부설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이전 한 때에는 구 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서는 4주 이내에 전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설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

부 록

역 내에 새롭게 부설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동항 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등기하면 된다.

제61조(부설사무소의 변경 등기 등) 제56조 및 제58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규정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부설사무소의 소재지에서도 이러한 규정에 규정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 후 존속하는 종교법인에 대한 변경 등기는 제5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다.

제62조(관할 등기소 및 등기부) ① 종교법인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 또는 그 지국 또는 이들의 출장소가 관할 등기소로 주관한다.
② 각 등기소에 종교법인 등기부를 갖춘다.

제63조(등기의 신청) ① 설립 등기는 종교법인을 대표할 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설립 등기의 신청서에는 관할 기관의 증명인증을 받은 규칙의 등본 및 종교법인을 대표할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5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변경 등기의 신청서에는 당해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권을 가진 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등기는 제외한다.
④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 등기의 신청서에는 전2항에 규정하는 서류 외에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 종교법인(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등기 사항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57조 규정에 의한 해산 등기의 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관할 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규정하는 서류 외에 관할청의 증명인증이 있는 인증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삭제

제65조(상업등기법의 준용) 상업 등기법 (1963년 법률 제125호) 제2조에서 제5조까지(등기소 및 등기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18조, 제19조2에서 제23조의2까지, 제24조 (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제26조, 제27조(등기부 등 등기 절차의 일반사항 및 동일한 소재 장소에서 동일 상호의 등기의 금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71조 제1항 및 제3항, 제 79조, 제82조, 제83조(주식회사의 등기) 및 제132조부터 제148조까지(등기의 경정과 말소 및 기타 사항)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48조 제2항 중 『회사법 제930조 제2항 각 호』는 『종교법인법 제59조 제1항 각호』로 동법 제71조 제3항 단서 중 『회사법 제47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 회사의 청산인으로 된 것 (동법 48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 주식회사의 대표 청산인으로 된 것)』은 『종교법인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으로 한다.

제 2 절 예배용 건물 및 부지의 등기

제66조(등기) ① 종교법인의 소유에 따른 그 예배용으로 제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해당 종교법인에서 예배용으로 제공하는 건물 및 그 부지인 취지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부지에 대한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그 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해 동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67조(등기의 신청)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해당 종교법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신청 정보와 함께 예배용으로 제공하는 건물 또는 부지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68조(등기 사항) 등기관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 기록 중 권리부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교법인에서 예배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종교법인에서 예배용으로 제공하는 건물의 부지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종교법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건물이 예배용으로 제공되어 지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토지가 예배용으로 제공하는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도 또한 같다.

부 록

② 등기관은 전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기의 말소를 한 경우에 당해 건물 부지에 대한 전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는 때에는 아울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70조(소유권의 이전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한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때에는 이와 함께 해당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동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건물에 등기의 말소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종교법인의 합병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8 장 종교법인 심의회

제71조(설치 및 소장 사무) ① 문부과학성에 종교법인 심의회를 둔다.

② 종교법인 심의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종교법인 심의회는 관할 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을 행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문부과학대신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종교법인 심의회는 종교 단체의 믿음, 규율, 관습 등 종교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조정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72조(위원) ① 종교법인 심의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은 종교인과 종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한다.

제7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재임할 수 있다.

제74조(회장) ① 종교법인 심의회에 회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이 상호 호선한 자로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한다.

③ 회장은 종교법인 심의회회 회무를 총리한다.

제75조(위원의 비용 변상)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은 그 직무에 대해 보상을 받지 않는다. 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③ 비용 변상 금액 및 그 지급 방법은 문부과학대신이 재무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6조 삭 제

제77조(운영의 특성) 이 장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종교법인 심의회의 의사 절차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대신의 승인을 받아 종교법인 심의회가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78조(피 포괄적 관계의 폐지에 따른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 ① 종교 단체는 그 포괄하는 종교법인과 해당 종교 단체와 피 포괄적 관계의 폐지를 방지할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기획한 것을 이유로 제26조 제3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 전에 또는 그 통지 후 2년 이내에 해당 종교법인의 대표 임원, 책임 임원 기타 임원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타 기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해임하고 그 사람의 권한에 제한을 추가, 기타 이러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종교법인은 다른 종교 단체와 피 포괄적 관계를 폐지한 경우에도 그 관계의 폐지 전에 원인이 발생한 해당 종교 단체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면제할 수 없다.

제78조의2(보고 및 질문) ① 관할 기관은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종교법인의 업무 또는 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 종교법인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에 해당 종교법인의 대표 임원, 책임 임원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직원이 질문하는 해당 종교법인 시설에 출입 때에는 당해 종교법인의 대표 임원, 책임 임원 기타 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록

1. 해당 종교법인이 수행 공익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을 경우
2. 제14조 제1항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한 경우에 해당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결여하는 것
3. 해당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제8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를 요구, 또는 해당 직원에게 질문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은 해당 관할 기관이 문부과학장관인 때에는 미리 종교법인 심의회에 자문하고 그 의견을 듣고 해당 관할 기관이 도도부현 지사인 때에는 미리 문부과학대신 통해 종교법인 심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 ③ 전항의 경우에는 문부과학대신은 보고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질문하는 사항과 이유를 종교법인 심의회에 나타내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관할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요구해 또는 해당 직원에게 질문하는 경우는 종교법인의 종교적 특성과 관습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는 해당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종교법인의 대표 임원, 책임 임원 기타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79조(공익사업 이외의 사업 정지 명령) ① 관할 기관은 종교법인이 실시하는 공익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종교법인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제한하고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명령은 그 이유 및 사업의 정지를 명할 기간을 명기한 서면으로 해당 종교법인에게 통지한다.
- ③ 관할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명령에 관한 변론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 당해 종교법인이 서면으로 변론을 하는 것을 제안했을 때를 제외하고 구두로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④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0조(인증의 취소) ① 관할 기관은 제14조 제1항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한 경우에 해당 인증에 관계되는 사안이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인증에 대한 인증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는 그 이유를 명기한 서면으로 해당 종교법인에게 통지한다.

③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것을 안자는 증거를 첨부하여 관할 기관에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에 관한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교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보좌인을 출두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청문 주재자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좌인의 수를 3명까지 제한할 수 있다.

⑤ 제78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관할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종교법인의 주된 사무소 및 부설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해산 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의2(이의 제기 절차의 자문 등) ① 제14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또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결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명령 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은 당해 심사 청구 또는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종교법인 심의회에 자문한 후에 해야 한다.

② 전항의 심사 청구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은 해당 심사 청구 또는 이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1조(해산 명령) ① 법원은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부 록

1. 법령을 위반하여 현저하게 공공의 복지를 해치는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것
 2. 제2조에서 규정하는 종교 단체의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1년 이상 그 목적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3. 해당 종교법인이 제2조 제1호의 종교 단체인 경우에는 예배 시설의 소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그 소실 후 2년이 지나도록 그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것
 4. 1년 이상 대표 임원 및 그 대무자가 없을 때
 5. 제14조 제1항 또는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대한 인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 해당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판명된 것
- ②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은 해당 종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관할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이유를 붙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종교법인의 대표 임원 또는 그 대무자 또는 해당 종교법인의 대리인 및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청구를 한 관할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검찰관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당해 종교법인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의 청구를 한 관할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 한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고가 해당 종교법인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에 대한 것일 때에는 집행 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 ⑥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이 확정 된 때에는 그 해산한 종교법인의 주된 사무소 및 부설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해산 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 ⑦ 제2항에서 전항까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관한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2011년 법률 제51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2조(수반자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의 제공) 문부과학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증 관련 종교법인의 대표자 혹은 대리인 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

리인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명령에 관한 종교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구두에 의해 변론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외에도 조언자 변호인 등으로 이러한 사람에 수반한 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수반자의 수를 3명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제83조(예비용 건물 등의 압류 금지) 종교법인의 소유에 따른 그 중에서도 예비용으로 제공하는 건물 및 그 부지에, 제7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용으로 제공하는 건물 및 그 부지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였다면 부동산의 선취 특권, 저당권 또는 질권의 실행을 위해 하는 경우와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 후 원인이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없다.

제84조(종교적 특성과 관습의 존중) 국가 및 공공 단체의 기관은 종교법인에 대한 공과금과 관계 법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폐하거나 그 부과 징수에 관하여 경내 건물 경내지 및 종교법인의 재산의 범위를 결정, 혹은 종교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기타 종교법인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 조사, 검사 기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종교법인의 종교적 특성과 관습을 존중하고 종교의 자유를 방해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제85조(해석 규정)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문부과학대신, 도도부현 지사 및 법원에 종교 단체의 믿음, 규율, 관습 등 종교적 사항 모든 형태를 조정, 혹은 간섭할 권한을 주거나 종교 임직원의 임면 기타 진퇴를 권고하고 유도, 혹은 이를 간섭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86조 이 법률의 어떠한 규정도 종교 단체가 공공의 복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87조(이의 제기 및 소송과의 관계) 제8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처분 취소의 소는 당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부 록

제87조의2(사무의 구분) 제9조, 제14조 제1항, 제2항(제2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및 제4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항(제28조 제2항 제39조 제2항 및 제46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4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3조 제3항 제46조 제1항, 제49조 제3항, 제51조 제5항 및 제6항, 제78조의2 제1항 및 제2항(제79조 제4항 및 제80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제81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1945년 법률 제67호)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의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제10장 별 칙

제8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법인의 대표 임원, 그 대무자 임시 대표 임원 또는 청산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관할 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증(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제외한다)의 신청을 했을 경우
2. 제19조 또는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않고 동조 각 호의 행위를 했을 경우
4.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하는 서류나 장부의 작성 또는 배치를 게을리 하거나 동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에 허위 기재를 한 경우
5.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사본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6. 제48조 제2항 또는 제4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 절차 개시의 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
7. 제49조의3 제1항 또는 제4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경우
8.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검사를 방해하였을 경우
9. 제7장 제1절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10.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하거나 동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혹은 허위의 답변을 한 경우

11.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행한 경우

제89조 종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 단체의 대표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